

발행인: 서울특별시장 정상천

편집: 문화공보관 심계섭

전화 75-7834

인쇄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
전화 75-6090

제 771 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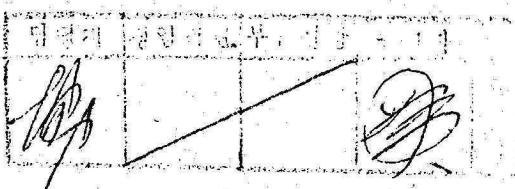
1980. 4. 19

시보

차례

◎ 공고

제 124 호 : 도시계획사업 (하수도 및 일부 도로) 실시계획공람공고	3
제 126 호 : 금호대교 건설공사 시행에 가에 관한 공고	3
제 128 호 : 분묘개장공고	4
제 129 호 : 소방용기제기 구제조업 소하 가취소 공고	4
제 132 호 : 토지수용재결 열람공고	5
제 22 호 (종로구 공고) : 동장직인 개작공고	6

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
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서울특별시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124 호

도시계획사업 (하수도 및 일부
도로) 실시계획공람공고

1. 서울시 고시 제 123 호 (80.4.9)
로 시설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사업
철산유수지 인입수로 정비공사에
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
계획법 제 25조 및 동법 제 25조
의 2 규정에 따라 14일간 일반의
공람에 공한다.
2. 관계 도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
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
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3.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
별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
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.

1980. 4.

서울특별시장

- 공 람 개 요 -

1. 사업장의 위치

기점: 구로구 가리봉동 42-23

종점: " " 32-53

2. 사업의 종류와 명칭

종류: 도시계획사업 (하수도 및
도로)

명칭: 철산유수지 인입수로 정비공사

3. 사업의 규모

암거: $3.2m \times 2.3m$ - 3연 $L = 20.2m$

4. 사업시행자: 서울특별시장

5. 사업착수 및 준공: 1980. 4.
1980. 9. 20
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, 건물의
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
권리명세: 별첨토지조사 생략

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
지수용법 제 4조제 3항의 관계인
주소, 성명: 별첨토지조사 생략
첨부: 토지조사 생략

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126 호

금호대교건설공사시행

허가에 관한 공고

도로법시행령 제 16조 3항의 규정
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금호대교
건설공사시행에 관한 허가를 하였기
이에 공고한다.

1980. 4.

서울특별시장

7-4 제771호 시

보 1980.4.19

도로의 종류	교량	노선명	금호대교
공사의 종류	교량건설공사		
구간	자: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168-1 지: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33		
공사시행장소	상동		
착공예정일	80. 6. 1	준공예정일	83. 12. 31
이유	남광토건(주) 대표 김응세로부터 민자에 의한 금호대교 건설공사 청탁에 의함.		

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128 호

분묘개장공고

서울특별시 강동구 가락동 산60-4, 5번지 일대에 기설시된 분묘에 대하여,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15조,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장할 것을 공고함.

다음

- 개장대상분묘: 강동구 가락동 산60-4, 5번지내 5기
- 분묘연고자신고기간: 1980.4.20 - 1980.5.20 (1개월간)
- 개장기간: 1980.4.20 - 1980.5.20 (1개월간)
- 기타
가. 분묘연고자는 위기간내에

강동구청 사회파에 신고하고 개장기간내에 개장바라며
나. 위기간내에 신고하지 않는
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, 당시에
서 배장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
의거 개장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립
다. 기타 상세한 것은 당시 도로국
도로파(73-4964)나 강동구청
자치과(178-1131)로 문의하시기
바람.

1980. 4

서울특별시 장

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129 호

소방용기계기구제조
· 업소화가취소공고

소방법 제37조제2항 및 동법

제771호 시

보 1980.4.19 7-5

시행규칙 제75조 2 규정에 의거 다음
소방용기계기구 제조업체에 대하여 허
가를 취소처분 하였음을 공고한다.

1980.4.18

서울특별시장

업체명	소재지	대표자	허가사항			허가취소사유	허가취소일자
			허가번호	허가일자	품목		
삼성방염 공업(주)	동대문구 충화동 110-15	전용태	내무부 허가 제65호	74. 9.16	방화액 및 방화 도료	소방법 제 3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	1980. 4.18
신동방 상사(주)	영등포구 도림동 222-1	박상연	내무부 허가 제17호	78. 11.23	방화액	75조 2 규정 위반	

⑤ 서울특별시 공고제 132 호

토지수용재결열람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275(79.6.26)

호로 도시계획사업(전기공급 설비)

시행허가된 도봉구 월계동 359-1

번지외 1필지에 대하여 토지수용법
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

2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

공고한다.

2.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토지수
용법 제36조 2 항의 규정에 의거
공고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.

3. 관계도서 및 서류는 도봉구청
도시정비과에 배치하여 토지소유자
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다음

가. 사업시행자 - 도봉구 월계동

359-1 외 1필지

나. 사업의 종류 - 전기공급설비
(154 kw 월계 변전소)다. 사업시행면적 - 3,911 m²

(1,183 평)

라. 사업시행자의 주소 - 충구남산동
3가 11-5

성명 - 한국전력관리본부장 김차경

7-6 제771호 시

보 1980.4.19

마. 사업의 차수 및 준공예정일

준공예정일 - 1981. 6.30

착공예정일 - 허가일로 부터 7일

바. 공고기간 - 공고일로 부터 14

이내

일간

사. 수용할 토지조서

위 치	지 번	지목	지 적	편입면적	소 유 자		관 계 인	
					주 소	성 명	주 소	성 명
도봉구월계동	산 108-13	임	2,896	2,896	동대문구청량리 1동235-1 (미주APT 7-401)	고범춘		
"	359-1	잡	904	904	은평구대조동 197-3	허홍열	중구신당동 349-13 성동구자양동 219-24	이부남 김용규

1980. 4.

서 울 특 별 시 장

◎ 종로구 공고제 22 호

6 조에 의하여 개작하였기 애래와
같이 공고함.

동장직인개작공고

종로구 평창동장 및 종로 4, 5, 6 가.

동장의 직인 및 계인이 마멸되어 관인
규정제 8 조 및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

1980. 4.

종로구청장

1. 사용일자: 80.5.1

2. 직인의 인영: 다음

제 771 호 시

보 1980.4.19 7-7

공인의인정	
수	신
평창농장인 및 계인	평창농장인 및 계인
총로 4,5,6 가동장인 및 계인	총로 4,5,6 가동장인 및 계인